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695

제안연월일 : 2016. 7. .
제 안 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가.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,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「국회법」 제44조에 따라 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 수는 18인으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국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

있도록 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「국제경기대회(세계육상선수권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)지원특별위원회」(2008. 8.26.～2009. 8.25.), 2009년 「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」(2009.12. 8.～2011.12.31.), 2010년 「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 특별위원회」(2010. 4.27.～2012. 5.29.), 2012년 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」(2012. 7. 9.～2012.12.31.), 2013년 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」(2013. 3. 19.～2015. 6.30.), 2015년 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」(2015. 9. 1.～2015. 12.31.)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.

현재 개최가 확정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,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국제경기대회 종료 이후에도 경기장 등 제반 대회 시설이 국민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하여 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려는 것임.